第299回國會 (臨時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 4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1年4月4日(月)

場 所 特別委員會會議室(議員會館 101號)

議事日程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57. 공직선거법 개정(재외선거 우편투표 허용)에 관한 청원
158. 선거권 연령 조정에 관한 청원
159.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160. 재외국민선거 우편제도 실시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16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6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6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6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6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6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6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6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6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7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7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7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73.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
17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8.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審査된案件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7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발의)(이명수 의원 외 9인 발의) ····· 21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김진표・김재윤・노영민・권선택・이시종・양승조・이광재・송민순・오제세・변재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42) ····· 21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이계진・강성천・윤석용・임태희・강창일・조전혁・현경병・손범규・안상수・김성수・정갑윤・임두성・구본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74) ····· 21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강창일・강길부・김우남・윤석용・김정권・송민순・양승조・장세환・임두성・송영선・안상수・김성순・이미경・박선숙・최철국・홍정욱 의원 발의) ····· 21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강창일・김희철・이한성・김종률・안민석・박기춘・이명규・김재균・안상수・문희상・장세환・이혜훈・최문순・이진삼・신상진 의원 발의) ····· 21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윤석용・우제창・김희철・박종희・양정례・이한성・홍정욱・이정선・정하균・김소남・유성엽・신상진・이화수・이진삼・임두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307) ····· 21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곽정숙・홍정욱・정하균・이진삼・김성곤・박은수・이한성・김성태・김희철・강기갑・홍희덕・권영길・이정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330) ····· 22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김성수・유성엽・유기준・안상수・김태원・구본철・신상진・강석호・박종희・홍장표・김종률・안효대・이진삼・이한성・송광호・유재중・황우여・김성곤・이해봉・박대해・김영우・양정례・홍일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332) ····· 22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허원제・유정복・이한성・양정례・유성엽・구본철・남경필・손숙미・안홍준・신상진・정하균・이진삼・이정선・박영아・황우여・박대해・정해걸・윤영 의원 발의) ····· 22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강창일・김진표・김충조・박기춘・백재현・신학용・오제세・우제창・이석현 의원 발의) ····· 22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이한성・임두성・안홍준・안상수・유성엽・신영수・박종희・강석호・송광호・황우여・정해걸・정영희・이혜훈・김성태・이상민・정하균 의원 발의)(의안번호 387) ····· 22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서갑원・유정현・유성엽・장세환・이진삼・김종률・안홍준・이한성・정하균・김세연・박선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399) ····· 22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이한성・임두성・안홍준・안상수・유성엽・박종희・강석호・송광호・황우여・조해진・이혜훈・김성태・이상민・정하균 의원 발의)(의안번호 424) ····· 22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이한성・임두성・안홍준・안상수・유성엽・신명수・박종희・강석호・송광호・황우여・이혜훈・나경원・김성태・이상민・정하균・박보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436) ····· 22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한선교・구본철・양정례・강석호・이한성・이진삼・정의화・유성엽・안상수・정해걸・이성헌・박보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445) ····· 22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강창일・전병헌・정장선・김진표・양정례・우제창・오제세・박병석・김재윤・양승조・안민석・전혜숙・최재성・우윤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501) ····· 22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노철래・이한성・김소남・김성조・구본철・정해걸・조윤선・강길부・김영우・김학송・양정례・송훈석・신성범・김동성・이화수・송영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585) ····· 22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유기준・양정례・백성운・송영선・김성태・강승규・이정선・김태환・윤석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665) ····· 22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김성회・강석호・강승규・김성태・김태원・김효재・나경원・남경필・박종희・배은희・백성운・손범규・정병국 의원 발의) ····· 22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이혜훈・김재윤・김동철・곽정숙・이정희・이미경・이애주・최문순・신낙균・김금래・박선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692) ····· 22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신낙균・이종걸・박기춘・이광재・양승조・장세환・김희철・안규백・신학용・김충조・이용섭・김성순・김우남・홍희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724) ····· 22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백원우・박기춘・최재성・양승조・김종률・조경태・김충조・김재윤・박선숙・이광재 의원 발의) ····· 22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이시종·변재일·우제창·이광재·김종률·백재현·김희철·이명수·노영민·오제세·박상돈 의원 발의) ····· 22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유정 의원 발의)(김유정 의원 외 82인 발의) ····· 22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정해걸·박대해·허태열·안상수·이혜훈·박보환·이한성·정하균·박종희·김종률·이진삼·강석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949) ····· 22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장표 의원 대표발의)(홍장표·권영진·김성수·김성태·김을동·김태환·노철래·백성운·안상수·유성엽·이재선·이철우·정갑윤·정영희·한선교 의원 발의) ····· 23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김희철·이한성·이종혁·백성운·김재윤·이진삼·이인기·구본철·정병국·박종희·임동규·김효재·송영선 의원 발의) ····· 23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이진삼·김장수·김용구·변웅전·이해봉·임영호·이상민·류근찬·김영진·김낙성·김창수 의원 발의) ····· 23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성윤환·강석호·김광림·김태환·안상수·유기준·유재중·이경재·정해걸·정희수·조원진·최구식·현기환·홍사덕·홍장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766) ····· 23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정권·강석호·김영록·이무영·장세환·강운태·정하균·황우여·우제창·정병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1805) ····· 23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최인기·최규식·이무영·권경석·조진형·강기정·김유정·김충조·김희철·이윤석·김태원·신지호·유정현·이은재·이인기·장제원·정갑윤 의원 발의) ····· 23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이한성·이진삼·김정권·유기준·신상진·구본철·박종희·송영선·김희철·원희목·김우남·김재윤·이정선·최영희·최인기·김소남·김효재·강석호·손범규·박보환·김동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2259) ····· 23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2688) ····· 23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안민석·송영길·최영희·김동철·강기정·변재일·이석현·문학진·김춘진·홍재형 의원 발의)(의안번호 2805) ····· 23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임동규·이한성·김정훈·이군현·이춘식·이윤성·최병국·정영희·허천·신성범·백성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2809) ····· 23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이한성·임동규·유성엽·김정훈·이군현·이춘식·이윤성·최병국·정영희·허천·신성범 의원 발의)(의안번호 2820) ····· 23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조윤선·전혜숙·이계진·안홍준·조문환·송광호·주호영·양승조·김상희·김재윤·이윤석·최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2958) ····· 23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유정현·김성회·정진섭·정갑윤·권경석·강성천·손숙미·홍장표·고승덕·유재중·이주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084) ····· 23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주성영·최구식·성윤환·유승민·이한성·유성엽·나경원·양정례·김성곤·정하균·김정훈·임동규 의원 발의) ····· 23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최구식·박민식·유승민·유기준·김무성·김광림·유성엽·박종희·이종혁·이명규·조문환·이학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3240) ····· 23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최구식·박민식·유승민·유기준·김무성·김광림·유성엽·이종혁·이명규·조문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3314) ····· 23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김충환·송민순·유성엽·정미경·김기현·이한성·권영진·안상수·임해규·김성수·이시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3409) ····· 23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권선택·심대평·김용구·이재선·이용희·

변웅전・김낙성・이명수・임영호・이회창・김창수・박상돈・류근찬・이진삼・조순형・이영애・박선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598) ····· 23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양승조・홍재형・강창일・유원일・유성엽・안민석・권영길・김재균・강기갑 의원 발의)(의안번호 3660) ····· 23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강창일・양승조・김동철・김재균・김우남・최재성・최인기・이미경・안민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3939) ····· 23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안상수・유기준・정해걸・황우여・이화수・이인기・오제세・안효대・이한성・손범규・배영식・김충환・김태환・김성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4096) ····· 24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진표・김재윤・천정배・안민석・신학용・박지원・조배숙・김희철・김춘진・김영록・최규성・정해걸・이춘석・김성순・강운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4101) ····· 24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훈석 의원 대표발의)(송훈석・박민식・이화수・이계진・최욱철・김우남・정해걸・이사철・조문환・이윤석・김영우・김낙성 의원 발의) ····· 24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낙성 의원 대표발의)(김낙성・우윤근・김창수・송훈석・임영호・최인기・이재선・심대평・최철국・류근찬・김용구・이영애・이상민 의원 발의) ····· 24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김우남・이미경・김동철・양승조・강창일・최영희・최인기・전혜숙・서갑원・이용섭・안민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212) ····· 24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이한성・주광덕・신영수・김성순・차명진・김종률・우제창・김성태・정해걸・윤석용・이정선 의원 발의) ····· 24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권선택・변웅전・심대평・이회창・박선영・이재선・이명수・김용구・김낙성・이진삼・류근찬・임영호・박상돈・조순형・이상민・이영애・김창수・문국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4402) ····· 24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송민순・최철국・양승조・송영길・백원우・최영희・강명순・이미경・전현희・곽정숙 의원 발의) ····· 24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김우남・박은수・박주선・백원우・서갑원・안민석・양승조・이광재・최철국 의원 발의) ····· 24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양승조・김동철・서갑원・이미경・김재균・김우남・김상희・이석현・이용삼・김충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4608) ····· 24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이혜훈・유기준・김정권・김태원・유승민・이화수・손범규・이해봉・유성엽・안상수・윤상현・신영수・강석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626) ····· 24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진성호・황우여・안상수・안효대・권경석・임두성・고승덕・원희목・김성수・이한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4682) ····· 24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례 의원 대표발의)(양정례・노철래・정영희・송영선・박기춘・강운태・손범규・송민순・김을동・정하균 의원 발의) ····· 24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성윤환・이한성・임동규・이정선・이성헌・한선교・박기춘・변재일・박상돈・박순자・원유철・정해걸・강석호・배은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4745) ····· 24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권택기・조문환・손범규・윤석용・강석호・박준선・황영철・이성헌・이사철・남경필・김영우 의원 발의) ····· 24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유원일・신영수・현경병・안효대・이정선・이한성・이윤성・손범규・오제세・황영철・이낙연・진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826) ····· 24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양승조・변재일・천정배・김창수・이종걸・강창일・김영진・장세환・김효석・이미경・강기정・박상돈・이명수・박선숙・문학진・강봉균・우제창・김희철・최규성・이낙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4913) ····· 24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신낙균・송민순・안규백・박주선・우제창・강창일・이미경・최규식・박기춘・이두아・김재윤・이인기・이낙연・서종표・문학진・김상희・김춘진・전혜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4930) ····· 24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김성수・안효대・이정선・이성헌・이화수・임두성・김효재・이한성・김장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5026) ····· 24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이주영・김창수・심대평・이재선・권선택・안민석・김낙성・임영호・박상돈・이낙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5292) ····· 24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송영선・김을동・김성수・노철래・박대해・김정권・정영희・이한성・정하균・심대평 의원 발의) ····· 25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권선택・김창수・심대평・이명수・이상민・이재선・이용희・임영호・주승용 의원 발의) ····· 25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임동규・신영수・정수성・김영선・박상돈・강명순・정해걸・정갑윤・손범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5375) ····· 25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손숙미・이정선・강성천・고승덕・신지호・배은희・여상규・나성린・강석호・윤석용・정미경・김금래・김소남 의원 발의)(의안번호 5783) ····· 25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김소남・손숙미・정미경・강명순・공성진・이군현・이애주・이종구・이정현・이화수・김옥이・이은재・조윤선・김금래・안홍준・이한성・권경석・황진하・정옥임・신상진・김성수・강승규・이병석・박영아 의원 발의) ····· 25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헌 의원 대표발의)(이성헌・김정권・손범규・이명수・이한성・임두성・김성수・김낙성・고승덕・신상진 의원 발의) ····· 25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정의화・유기준・강성천・유성엽・황우여・한선교・강석호・정미경・박준선・이명수・김을동・박상은 의원 발의) ····· 25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김영록・신성범・김종률・조진래・이인제・송훈석・송광호・이용삼・정병국 의원 발의) ····· 25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최재성・조경태・이윤석・박병석・김유정・이미경・신낙균・김충조・오제세・최철국・김동철・최규식・이강래・안규백・김재균・원혜영・김부겸・강기정・장세환・노영민 의원 발의) ····· 25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원유철・안효대・강길부・이윤석・김성조・최병국・신성범・이진복・김소남・김기현・최구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6004) ····· 25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강성천・김성수・김성회・김세연・박대해・박민식・서상기・이종혁・이화수・정갑윤・조원진・황영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6022) ····· 25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진 의원 대표발의)(이계진・신학용・정영희・유기준・최영희・유성엽・손범규・이해봉・이인기・박은수・이한성 의원 발의) ····· 25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조영택・최영희・송민순・김춘진・백원우・전현희・최재성・박은수・강창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6457) ····· 25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서갑원・신학용・김상희・양승조・박은수・김성순・강운태・우제창・백재현・김우남 의원 발의)(의안번호 6462) ····· 25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김성조・이한성・한선교・조문환・유일호・임동규・성윤환・윤영・정옥임・배은희 의원 발의) ····· 25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홍재형・양승조・송민순・강창일・김영진・김유정・조영택・박선숙・이시종・조경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6598) ····· 25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김재윤・양승조・강창일・김창수・박상돈・이석현・강기정・김재균・김영진・박은수・안규백・김부겸・최영희・이미경・김성순・조배숙・박지원・박기춘・김영환・조영택・안민석・김정권・우제창・문학진・이용섭・변재일 의원 발의) ····· 25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김동철・이미경・김효석・이석현・백재현・홍재형・양승조・안민석・김유정・서갑원・최영희・김상희・김재균 의원 발의)(의안번호 6726) ····· 25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이정선・홍준표・진성호・이한성・이명수・한선교・권영세・박준선・이명규・김성회 의원 발의) ····· 25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원희목・현기환・김정훈・현경병・김정권・권택기・허천・신지호・진수희・김소남・장제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6882) ····· 25
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정갑윤・김태원・김소남・정수성・이윤석・신지호・안경률・권경석・이명수・이은재・이범래・유정현・김영우・차명진・심재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6966) ····· 26
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김태원・김소남・정수성・이윤석・신지호・안경률・권경석・이명수・이은재・이범래・유정현・김영우・차명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6971) ····· 26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김우남・이명수・이한성・황진하・서상기・김세연・정수성・이은재・박준선 의원 발의) ····· 26
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강기정・원희룡・최영희・김춘진・서갑원・문학진・김재균・김영진・이찬열・백원우・김우남・전현희・이종걸・박선숙・조영택 의원 발의)(의안번호 7072) ····· 26
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백원우・전현희・김춘진・이찬열・이종걸・안민석・최규식・박선숙・조영택・박주선・김영진・강창일・강기정・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7073) ····· 26
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서갑원・김창수・김영진・신학용・이찬열・조영택・오제세・양승조・박선숙・전병헌・최재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7220) ····· 26
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박주선・조영택・최영희・전혜숙・박기춘・문학진・김상희・김진애・박은수・홍재형 의원 발의) ····· 26
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김우남・김재균・강창일・김동철・이미경・최영희・최규식・이석현・양승조・김효석・최재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7469) ····· 26
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 의원 대표발의)(남경필・김무성・정병국・원희룡・정희수・박선영・강명순・김부겸・정태근・이춘석・황우여・박준선・권영진・정의화・김기현・권택기・구상찬・조정식・정두언・권영세 의원 발의) ····· 26
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신성범・박희태・조진래・성윤환・정해걸・정갑윤・조문환・송광호・정병국・박민식 의원 발의) ····· 26
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박은수・김재윤・최영희・김유정・전현희・신낙균・조배숙・김춘진・최문순・이미경・이은재・박순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7523) ····· 26
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홍재형・김동철・김영진・신학용・조배숙・송영길・김재윤・이낙연・이종걸・백재현・조영택・김성곤・양승조・박선숙・변재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7530) ····· 26
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전혜숙・강기정・박선숙・최영희・김재윤・이찬열・김재균・우윤근・전현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7591) ····· 26
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권선택・임영호・강창일・유성엽・이상민・김창수・박상돈・이인제・이재선・김낙성・최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7685) ····· 26
1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강용석・고승덕・권영세・김성태・김세연・김영우・김옥이・김재경・김정권・김창수・박민식・서상기・손범규・손숙미・송영선・송훈석・신영수・여상규・유기준・유정현・이계진・이군현・이범래・이정선・이한성・임영호・장윤석・정태근・조원진・주광덕・주성영・최연희・허천・홍일표・권선택 의원 발의)(의안번호 7749) ····· 26
1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강기갑・곽정숙・권영길・김성곤・

김상희・김영진・김유정・김재균・김재윤・김진애・김춘진・김혜성・김효석・노영민・문학진・박기춘・박병석・박선숙・박영선・박은수・박주선・박지원・서종표・송영길・신건・신낙균・신학용・안민석・오제세・우제창・원혜영・유원일・이강래・이용희・이정희・이종걸・장세환・전현희・조경태・조승수・최규식・최문순・최영희・최인기・홍재형・홍희덕 의원 발의) ····· 26
1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최영희・김성순・김춘진・박은수・송영길・양승조・원혜영・이미경・이찬열・전혜숙・전현희 의원 발의) ····· 26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서갑원・양승조・전병헌・김용구・박선숙・오제세・김영진・황우여・유원일・장세환・최재성・이인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7844) ····· 26
1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금래 의원 대표발의)(김금래・김세연・박은수・신낙균・신영수・안홍준・원희룡・원희목・유정현・이두아・이인기・이한성・이해봉・조영택・한선교・허원제・홍영표・홍정욱・홍희덕・황우여 의원 발의) ····· 27
1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재윤・최문순・변재일・신학용・홍영표・강창일・이찬열・조영택・권영길・전병헌・유성엽・홍희덕・박은수・김재균・정동영・유원일・김영진・우제창・박선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7938) ····· 27
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김무성・홍영표・이찬열・송영선・유성엽・김재윤・안민석・오제세・박선숙・신낙균・김영진・이성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7944) ····· 27
1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의원 대표발의)(윤영・정희수・김효재・권영진・홍준표・이화수・이해봉・장광근・노철래・김무성 의원 발의) ····· 27
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원혜영・정해걸・이한성・박민식・오제세・김금래・유정현・박순자・안경률・안홍준・박대해・이철우・김광림・황우여・박영아 의원 발의) ····· 27
1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정병국・유기준・권영진・이해봉・안홍준・정해걸・박선영・김성순・이종혁 의원 발의) ····· 27
1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김춘진・전현희・강봉균・우제창・홍재형・박은수・유성엽・이한성・박기춘・조영택・양승조・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8394) ····· 27
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김창수・이재선・김용구・이명수・임영호・권선택・변웅전・류근찬・김낙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8436) ····· 27
1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홍재형・김우남・이낙연・조배숙・김춘진・노영민・신학용・김유정・최문순・김영진・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8514) ····· 27
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윤석용・원희목・정병국・유기준・원희룡・이한성・홍영표・권영진・정양석・이명수・안경률・정해걸・황우여・김성태・신영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8600) ····· 27
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김충환・김옥이・유성엽・강석호・유기준・공성진・김효재・황우여・황진하・임해규・김용구・전여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8654) ····· 27
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박은수・양승조・김영록・장세환・최규성・전현희・최철국・유선호・김재균 의원 발의) ····· 27
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홍재형・백재현・조경태・박선숙・우제창・최인기・오제세・양승조・노영민・변재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8814) ····· 27
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유성엽・김재균・김우남・김성곤・김재윤・최규성・조영택・안민석・정범구・박선숙・김춘진 유원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8840) ····· 27
1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정두언・이인기・최구식・김성조・장제원・윤영・김학송・김태원・노철래 의원 발의) ····· 27
1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금래・김옥이・김학송・박주선・신낙균・양승조・유승민・이종걸・이진삼・이춘석・임영호・원혜영・장세환・조영택・최규식・홍영표 의원 발의) ····· 27

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김학송・김정권・조진래・황진하・유승민・임동규・홍정욱・정태근・김장수・유기준 의원 발의) ····· 27
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이상민・이미경・이한성・권경석・신성범・강명순・신상진・황우여・윤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8925) ····· 27
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이사철・조문환・김정훈・이한성・정갑윤・정희수・장광근・박준선・김성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8957) ····· 27
1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해걸 의원 대표발의)(정해걸・정희수・안규백・김성수・신학용・이철우・최인기・임영호・정양석・정갑윤・김세연・임동규・황영철・김성태・유성엽・김학송・김효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9055) ····· 27
1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유기준・진영・김효재・황우여・권경석・조진래・이경재・권영진・정해걸 의원 발의)(의안번호 9057) ····· 28
1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김재균・양승조・조영택・유성엽・최규성・안민석・이윤석・천정배・김영진・김춘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9075) ····· 28
1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조정식・홍영표・전혜숙・강기정・최규식・이종걸・노영민・홍재형・김춘진・김재윤・손숙미・박지원・박선숙・정동영・이한성・유원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9118) ····· 28
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조정식・이미경・김재윤・최규성・노영민・이윤석・김영진・문학진・추미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9133) ····· 28
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김재윤・김재균・조정식・최문순・이미경・강창일・신학용・노영민・이석현・김효석・백재현・김동철・이성남・조영택 의원 발의) ····· 28
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곽정숙・이정희・강기갑・홍희덕・권영길・조승수・안민석・이낙연・박은수・이성헌・유성엽・정동영・이상권・박주선・유원일・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9254) ····· 28
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윤상일・신지호・이명수・김소남・박대해・서병수・안효대・이인기・임동규・이한성・정희수・김혜성・유성엽・공성진・배영식・최규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9294) ····· 28
1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원희목・김소남・임동규・이주영・정미경・김혜성・고승덕・안형환・강성천・이명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9326) ····· 28
1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임영호・김춘진・김을동・이재선・류근찬・김창수・김용구・송훈석・김낙성・정해걸 의원 발의)(의안번호 9366) ····· 28
1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강기정・문학진・안민석・최철국・양승조・최재성・주승용・조경태・김우남・신건・이춘석・전현희・홍재형 의원 발의) ····· 28
1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해걸 의원 대표발의)(정해걸・김정・이한성・박대해・홍영표・정희수・구상찬・노철래・유정현・송훈석・권경석・이해봉・김소남・유기준・이철우・강석호・이명수・신성범 의원 발의)(의안번호 9415) ····· 28
1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김정훈・원희목・배은희・나성린・김성태・한기호・유정현・유일호・백성운・정진섭・박상은・김금래・장제원 의원 발의) ····· 28
1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영택 의원 대표발의)(조영택・안규백・박은수・김재균・최문순・김동철・김춘진・주승용・전병헌・박주선・최철국・이종걸 의원 발의) ····· 28
1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진영・유정현・김효재・김정권・박보환・구상찬・김학용・권영진・김태원・김성동 의원 발의) ····· 28
1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권 의원 대표발의)(김정권・강길부・권경석・김성조・김태원・김학용・윤석용・이종혁・정미경・주승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9761) ····· 28
1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주승용・최철국・김재균・최규성・

강창일·문학진·김창수·유선호·김유정 의원 발의) ····· 28
1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박기춘·김영진·최규성·박은수·홍영표·박선숙·이종걸·박주선·추미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9782) ····· 28
1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원희목·고승덕·정미경·이한성·이인기·이명수·안형환·이두아·김소남 의원 발의)(의안번호 9817) ····· 28
1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이찬열·박우순·김성곤·최문순·이인기·손범규·이한성·유성엽·박주선·최규성·김재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9986) ····· 28
1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창수·임영호·김용구·이상민·권선택·김을동·김태원·임동규·안효대·윤상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16) ····· 28
1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정장선·우제창·최문순·김춘진·양승조·박은수·박주선·유재중·김용구·최철국 의원 발의) ····· 28
1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조경태·이명수·신건·이상민·김성수·이찬열·오제세·김우남·김용구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11) ····· 29
1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고승덕·김성수·안상수·이정선·원희목·안홍준·김낙성·이은재·배은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13) ····· 29
1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최규성·이용섭·박은수·강창일·김세연·홍희덕·김우남·송민순·이미경·이찬열 의원 발의) ····· 29
1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해 의원 대표발의)(박대해·유정현·김을동·김태원·김충환·정수성·신영수·정해걸·노철래·김금래 의원 발의) ····· 29
1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유정현·안효대·이정선·김성수·조전혁·유재중·손숙미·정미경·원희목 의원 발의)(의안번호 10335) ····· 29
1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진형 의원 대표발의)(조진형·이사철·조문환·이경재·김성수·이철우·홍일표·안형환·이화수·김영우·이은재·허천·박대해·홍사덕·김태원·최연희 의원 발의) ····· 29
1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권 의원 대표발의)(김정권·김장수·이한성·손범규·한선교·임해규·김태원·권영진·황영철·현기환·김성태·백성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10410) ····· 29
1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김재균·이미경·김동철·이석현·양승조·김유정·백재현·신건·강창일·최재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61) ····· 29
1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이애주·박선영·유정현·박민식·김성태·이한성·신영수·임해규·황영철 의원 발의) ····· 29
1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권선택·김낙성·김용구·김창수·류근찬·박선영·변웅전·이명수·이상민·이용희·이재선·이진삼·이회창·임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41) ····· 29
1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이인제·이해봉·김충환·강석호·여상규·유원일·김충조·변웅전·이진삼·임영호·안규백·이강래·정수성·황우여·정해걸·안민석·오제세·김장수·서병수·김낙성·조진래·이춘석·이용경·원희목·이상민·신영수·이재선·심대평·노철래·이한성·노영민·김춘진·우윤근·유성엽·박영선·김영록·박기춘·정갑윤·류근찬·김용구·이인기·박우순·이석현·홍재형·송광호·변재일·박순자·이은재·이정현·이두아·최인기·이용희·주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93) ····· 29
1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현 의원 대표발의)(유정현·심대평·정두언·조전혁·조원진·박보환·최경희·임해규·이인기·고흥길·배영식·원유철 의원 발의) ····· 29
157. 공직선거법 개정(재외선거 우편투표 허용)에 관한 청원(박준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9
158. 선거권 연령 조정에 관한 청원(강기갑·권영길·김재윤·박선숙·유원일·이종걸·홍희덕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9
159.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강기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9
160. 재외국민선거 우편제도 실시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영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9

16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이시종·우제창·변재일·이광재·백재현·김희철·이명수·노영민·오제세·박상돈 의원 발의) ····· 34
16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김희철·이용삼·김재균·김동철·송영길·양승조·강창일·조영택·이미경·김우남·김종률 의원 발의) ····· 34
16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최영희·김동철·강기정·변재일·안민석·이석현·문학진·김춘진·홍재형 의원 발의) ····· 34
16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권영진·김성태·신성범·김선동·권택기·박민식·정태근·주광덕·황영철·김성식·조전혁·이한성·현기환·서상기·김세연·이인기·윤석용·남경필 의원 발의) ····· 34
16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권택기·정태근·현경병·백성운·강승규·조문환·김영우·조진래·이화수·김재경 의원 발의) ····· 34
16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주성영·신성범·이범래·유정현·성윤환·장제원·이한성·권영진·손범규·김금래·강석호·원희목·신지호·정미경·안효대 의원 발의) ····· 34
16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박민식·원희룡·박준선·이한성·김세연·정갑윤·현기환·전현희·유재중·박대해 의원 발의) ····· 34
16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권영길·안민석·강기갑·곽정숙·이정희·홍희덕·조승수·유원일·김재윤·최문순·김영진·유성엽 의원 발의) ····· 34
17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홍재형·김정권·백원우·임영호·조영택·양승조·주승용·강기정·송민순·조전혁·노영민·전현희·최재성·이윤석 의원 발의) ····· 34
17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발의)(박기춘 의원 외 86인 발의) ····· 34
17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박기춘·원혜영·박은수·정장선·유선호·박영선·김진표·김재윤·오제세·조진형·유성엽·백재현·전병헌·권성동·이정선 의원 발의) ····· 34
173.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강기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 34
17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윤석용·우제창·김희철·양정례·고승덕·김성태·정해걸·정하균·김소남·정양석·이종구·유성엽·신상진·이진삼·임두성·김재윤 의원 발의) ····· 34
17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유기준·양정례·백성운·고승덕·송영선·김성태·강승규·이정선·김태환 의원 발의) ····· 34
17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발의)(김희철 의원 외 82인 발의) ····· 34
17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성윤환·강석호·김광림·김태환·안상수·유기준·유재중·이경재·정해걸·정희수·조원진·최구식·현기환·홍사덕·홍장표 의원 발의) ····· 34
17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 35
17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권선택·심대평·김용구·이재선·이용희·변웅전·김낙성·이명수·임영호·이회창·김창수·박상돈·류근찬·이진삼·조순형·이영애·박선영 의원 발의) ····· 35
18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김정권·김성수·신지호·임해규·정해걸·이범래·김소남·이은재·김성조·이명규 의원 발의) ····· 35
18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원유철·백성운·이군현·임동규·현경병·최병국·진성호·김소남·이춘식 의원 발의) ····· 35
18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양승조·김재균·강창일·김우남·김동철·이미경·최규식·이석현·김효석·최영희·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4833) ····· 35
18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안민석·강창일·김종률·전혜숙·

유성엽・김성곤・원혜영・이두아・최영희 의원 발의) ····· 35
18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김성회・고승덕・김세연・김영진・김성태・김충환・김춘진・노철래・박진・박상은・박종희・여상규・이경재・이주영・이철우・유기준・장윤석・정미경・조전혁・황우여 의원 발의) ····· 35
18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권택기・정태근・현경병・백성운・강승규・조문환・김영우・조진래・이화수・김재경 의원 발의) ····· 35
18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곽정숙・이정희・홍희덕・권영길・강기갑・박선영・김춘진・신낙균・박은수・유성엽・조승수・최영희 의원 발의) ····· 35
18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철국・전현희・이춘석・우윤근・박은수・노영민・김재균・김동철・박상돈・양승조・김성곤・이용섭 의원 발의) ····· 35
18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김동철・김효석・홍재형・양승조・안민석・김유정・서갑원・최영희・김상희・김재균 의원 발의)(의안번호 6728) ····· 35
18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강창일・정동영・강운태・조승수・박선숙・김춘진・김우남・김영진・강기갑・곽정숙・이낙연 의원 발의) ····· 35
19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손범규・이정현・신성범・임영호・이해봉・박대해・황우여・최구식・안효대 의원 발의) ····· 35
19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안효대・여상규・강성천・나성린・장제원・이범래・김소남・임동규・이명수 의원 발의) ····· 35
19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김정권・양승조・강창일・김우남・송영길・이명수・김유정・원혜영・강기정・서종표 의원 발의) ····· 35
19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최영희・김성곤・김유정・박은수・문학진・박선숙・이성남・신낙균・이종걸 의원 발의) ····· 35
19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강기정・이찬열・서종표・이종걸・김춘진・김진표・백원우・서갑원・김영진 의원 발의) ····· 35
19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백원우・박기춘・김동철・이춘석・김우남・장세환・문학진・강기정・이윤석・이석현・최재성・박지원 의원 발의) ····· 35
19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고승덕・김성수・이정선・원희목・안홍준・안효대・조전혁・유재중・장제원 의원 발의) ····· 35
19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강창일・유선호・박은수・김영우・김영록・유성엽・김세연・김춘진・강용석・조영택・백재현 의원 발의) ····· 35
198.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강기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 35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이경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국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방금 전 본회의에 이어서 우리 특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공직선거제도에 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공직선거법안 등 19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함으로써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모습을 보여 주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정치개혁특위의 여야 위원님들께서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법안 심사에 임해 주시리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정치관계 법률안 심사와 관련하여 이 자리에 소관 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고 배석하신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치관계법 심의를 위해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정치관계법 개정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는 20년 만에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같은 해에 치러지고 선거 사상 처음으로 재외선거가 실시됩니다.

당장 올 10월부터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며 11월과 12월에는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등록신청,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등록 등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내년 4월부터는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와 헌법불합치 결정된 대통령선거 기탁금 관련 조항 등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짐으로써 1년 앞으로 다가온 양대 선거가 원만히 관리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선거문화와 선거제도의 선진화에 대한 국민적 개선 요구에 부응하며 완벽하고 흠 없는 절차사무관리와 선거부정에 대한 엄정한 조사·단속을 통하여 공명선거 구현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의식의 성숙과 선거관계자의 자정 노력 그리고 국회의 입법개선 노력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문화는 과거의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선진 정치문화로 도약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선거가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국민의 관심 속에 정치·사회적 통합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당이 현대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민의 관심을 고려하였을 때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민주적인 조직으로 발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제도가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과 그 수입·지출 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정치자금의 적정하고 원활한 조달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 사상 처음으로 치러지는 재외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완성 과정에서 매우 주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지만 또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재외선거인명부의 정확성 확보와 선거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규정이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과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선거부정을 실효적으로 예방·단속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선거환경의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재외선거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정치관계법 개정토론회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청회에서 개진된 정당·학계·언론·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사를 형성하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규범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수단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치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정치적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경도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제출하게 될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담긴 고민과 열정을 널리 헤아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우리 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용희 선거실장입니다.

정훈교 재외선거기획관입니다.

추형관 법제기획관입니다.
윤석근 조사정책관입니다.
손재권 정당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의정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1시15분)

○위원장 이경재 다음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법률안은 10여 일이 경과되어야만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기한 내에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156항의 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상정된 법안들과 관련된 법안이므로 같이 심사하기 위해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원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겸 간단한 현안질의 한 가지만 사무총장님한테 좀……

○위원장 이경재 가만있어, 이것은 지금 의결이 됐는데……

○백원우 위원 그것 말고요, 그것 말고 다른 것……

○위원장 이경재 다른 의사일정?

○백원우 위원 예, 의사일정 겸 사무총장님께 간단하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얼마 전에 선관위가 정치관계법 관련해서 토론회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백원우 위원 저도 토론자로 나갔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청와대가 선관위를 대단히 폄하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청부입법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언제부터 선관위가 정치권의 청부입법을 하는 기관으로 전락을 해서 청와대의 정무수석이라는 사람과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선관위,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의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는 과정인데 선거관리위원회를 정치권의 청부입법기관 정도로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언론보도에 의한 내용은 보았습니다.

○백원우 위원 아니,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 대변인, 김희정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표현이 없었지요.

○백원우 위원 정무수석이 사적인 공간에다가 '정치개악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 또 다른 언론의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정치권의 청부입법이라는 인상이 짙다' 이런 발언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의 의견, 또 의견을 모으고 있는 과정인데 지난번에도 정치자금법 문제가 있었을 때 많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정을 해라 이런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선관위에서도 전향적인 의견을 내시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청와대라고 의견을 못 내는 것은 아니지만 한 나라의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개악이라든지 청부입법이라든지, 저는 선관위 기구를 이렇게 폄하하는 청와대 인식이라는 것이 대단히 문제 있는 인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를 끌고 나가시는 사무총장님의 의견을 이 부분에서는 피력을 해 주시는 게 저는 합당하다, 그러지 않고는 이게 마치 무슨 선관위와 정치권이 짜고서 청부입법을 하는 노름판 정도로 이 정개특위의 위상이 추락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건지 의견을 좀 내 놓으셔야지 이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위원장님에게도 요청을 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정치권이 선관위에다가 청부입법을 해 놓고서 진행한다 이런 식의 인식이 있다면 정개특위가, 이게 무슨 정개특위를, 국회를 청와대 하부기관이나 명령을 받는 집행기관 정도로 생각을 하는 오만한 발상인데 일단 선관위 사무총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이 부분에서는 지금 질의하신 존경하는 백원우 위원님 말씀같이 의견 수렴 과정에 있는 사안입니다.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 장기적으로 정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정검토안을 작성해서 정치권이나 학계나 언론·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었고 또 그 과정에는 누구든지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서, 그런 맥락으로서 간주하고 저희들은 오늘 여태껏 논의된 과정들을 토대로 해서 오후에 정책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겁니다.

○백원우 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요 청부입법을 조금이라도 하신 적이 있느냐라는 것과 이 선관위가 내놓은 의견을 정치개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선관위, 독립기관입니다. 정치권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고 모든 정당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는 헌법상의 독립기구가 낸 의견이 정치권으로부터 청부를 받은 입법이라고 표현했던 이 청와대의 인식 또 정치개악이라고 정치를 담당하는 정무수석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언한 것에 대한 의견을……

의견을 낼 수 있지요. 의견을 낼 수 있는 데 이렇게 선관위를, 역대 선관위에서 정치권으로부터 또는 청와대로부터 선관위의 위상이 이렇게 무시당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지요. 청와대도 의견을 내고 국회도 의견을 내고 다 의견을 내는데 이렇게 선관위의 중립성이 훼손된 상태로, 위협받는 상태로 선관위가 앞으로 일을 하실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걸 여쭙는 겁니다. 독립기구의 수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시라 이거지요. 안 그러면 저희가 선관위가 중립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헌법상 독립기구로서의 자기 자존심을 확실히 살리는 그런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92년 11월부터 정치관계법의 개정 의견을 제출하도록 법에 도입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치발전 정도라든지 의식 수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개정 의견을 줄곧 내 왔습니다. 그 결과로 94년도에 통합선거법이 제정이 되고 2004년도, 2005년도 고비용·저효율 정치문화를 개선하는 그런 법이 개정이 되었고 또 2009년도에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이 부여가 되는 이런 것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위에서도 이런 것을 제기 받은 것도 없고 우리 위원회가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온 그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 가지고 언론에서도 마치 선관위가 떠미는 정치권, 정치권 이익의 대변인이라는 이런 것을 운운하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는 굴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선관위는 헌법에서 부여한 임무를 꿋꿋이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백원우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진행발언 성격이 좀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청와대가 나중에 국회가 의견을 모은 것을 가지고 어떤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 법안 의결에 대해 최종적인 승인권이 어쨌든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그런데 정개특위가 논의도 시작하기 전에 선관위도 토론하는 과정에 나온 얘기에 대해서 대변인과 정무수석, 익명의 고위관계자는 청부입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논다라면 국회의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쳐 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개특위가 논의된 적이, 저는 경력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것을 딱 규정을 해 놓고 간다라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국회를 무시해도, 국회가 여론을 수렴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를 청와대의 하부기관 정도로 자기네가 싫은 것은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양당 간사하고 협의를 하시든가 해서 청와대브리핑에 대해서 특히 정무수석의 발언에 대해서,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트위터에 공식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고위관계자라는 사람은 청부입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위원장님께서 준엄하게 경고를 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청와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내에서만 논의가 되는 이것은 지극히 국회 무시 발상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훈 위원 저도 의사행발언.

○위원장 이경재 예.

○김정훈 위원 총장님 저번에 청와대에서 그런 발표가 있어 가지고 중앙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청와대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하셨지요? 중앙선관위가 독립된 기관인데 이런 권한을 침해하는 발언을 삼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언론에서 저는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저희들 정개특위

를 이제 막 시작을 하려 하는 단계인데 이번 정개특위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국회제도라든지 선거제도, 정당·정치자금법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서 더 이상 놔뒀다가는 정말로 이 국회가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정개특위 위원들은 정말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불합리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고치고 정말로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선거법·정당법 등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일명 오세훈 선거법이 그동안 죽 시행되어 왔는데 그 시행되어 오면서 생긴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보완을 하고 또 좀더 이렇게, 지금 요새 또 국회의원들 자기 그거 한다 이런 법들을 내 가지고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고, 그렇게 개정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항상 국민의 뜻에 서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지금 이 정개특위가 열려 가지고 있는데 선관위에서 어떤 그런 의견을 낸 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그런 뜻이 있으면 우리 한나라당 정개특위 위원들한테 뜻을 전달해서 특위에서 그게 논의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선관위도 제가 볼 때 미리 공청회를 하고 해 가지고 국민들 여론을 묻고 이래 해 가지고 발표가 되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저는 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야 될 법을 미리 공청회를 해 가지고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기도 전에 어떤 여론 조성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걸 정개특위에 제출하고 정개특위에서 공청회를 하면 되지 왜 중앙선관위가 낼 법안을 갖다가 선관위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하고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발언을 하고 또 중앙선관위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정부끼리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같은 정부기관끼리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반론 제기하고 하는 게 그게 모양이 바른 일입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정개특위가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각자 의견내고 이런 것은 삼가해 주시고 정개특위에서 모든 게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병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재 전병헌 위원님.

○전병헌 위원 존경하는 백원우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청와대가 선관위에 대해서 '정치권의 청부 입법이다.' 운운하면서 선관위를 마치 하부 기관 그리고 정부 내의 일종의 종속 기관으로 착각을 하고서 이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무총장께서 선관위의 기존의 어떤 입장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정치관계법을 논의하는 논의의 당사자이자 논의의 공식 기구인 정개특위 내에서 위원의 공식적인 질의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유감 표명 정도는 하시는 것이 선관위의 위상을 정립하고 그리고 청와대의 잘못된 인식과 인상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쐐기를 박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종우 총장께서 정확하고도 확실한 선관위의 독립적이고 그리고 정치 중립적인 위상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위원장께서도 백원우 위원께서 양당 간사가 협의해서 위원장이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는 존경하는 김정훈 간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양당 간사와 협의해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선관위 사무총장께서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셔야 하듯이 정개특위 위원장님으로서 청와대의 이와 같이 잘못된 인식과 그리고 과도한 개입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경고와 지적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청와대 내지는…… 청와대라는 것이 왜 청와대입니까? 하나의 권력 심장부이고 권력 핵심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일거수일투족,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개특위가 독자적이고도 독립적인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다시 한번 재확인한다는 의미에서도 위원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천명해야 된다, 그리고 청와대의 이와 같은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경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선관위가 무슨 청와대와 같은 정부기관이라는 그런 인식도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정부기관이라 할지라도 선관위는 권력과 정파로부터 독립된 위상과 권한을 가지고

공정하고 중립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인식과 의지로써 그야말로 공정한 선거 관리 그리고 공정한 선거 규칙을 만들어내는 주무기관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공청회를 하고 또 여론의 수렴 노력을 하는 것은 그것은 자연스런 선관위의 독자적인 업무 영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관위가 보다 국민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독자적인 안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독자적인 안을 우리 정개특위에서 의원들의 제출안과 더불어서 함께 논의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종우 총장님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으로서 분명하고도 단호한 항의와 경고 그리고 위상의 제고를 위한 발언을 다시 한번 요구를 하고 또 위원장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쪽에 분명하고도 단호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이경재 예, 권영진 위원님!

○권영진 위원 정치개혁특위가 이제 막 시작할 무렵인데요. 정치개혁특위는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이해도 관계가 되어 있고 각 정당의 이해도 때로는 첨예하게 부딪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정말 슬기롭게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장에……

저는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내용은 공감입니다. 그러나 절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 사무총장한테다 일문일답 하고, 저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무총장에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 조치를 취하더라도 위원장님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건의를 드려서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이지 개별 위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한다고 하면서 사무총장을 상대로 개별 질의해 버리면 저는 이것이 의사진행과 관계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위원장께서 정말 의사진행에 지혜를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재 감사합니다.

박준선 위원님!

○박준선 위원 한나라당의 박준선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말씀 참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고 다 일련의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그다음에 선관위…… 이번 일뿐만 아니라 과거 서거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청와대와 독립기관인 선관위는 간혹 충돌을 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여당 위원인데요, 초선 국회의원이고요. 이 정개특위에 들어오면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깨끗해야 되고,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오세훈 선거법에 의한 그런 여러 가지 족쇄로 인해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법도 유지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활동은 효율적으로 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국회의원들은 그 오세훈 선거법이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이라 하고 나아가서 선거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조차도 다소 문제가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게 된 지경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선관위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선거법은 유지되어야 된다, 국회의원들은 좀더 똘똘 말아놔야 된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은 풀어주면 안 된다라는 대 국회에 대한 불신이 아직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그러한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장, 비서관, 많은 행정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와대가 곧 대통령이라는 인식은 구시대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2011년 이 시점에 과거와 달리, 권위적인 청와대와는 달리 공개적으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여론에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토론 문화에서 청와대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관위에서는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여야 위원들이 서로 지혜를 모아서 청와대 의견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무소불위의 청와대 권부 그런 데서 한 마디 한 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이랑 달리 지금은 청와대도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선관위는 충분히 독립기관으로서 의견 개진을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

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쯤에서 논의를 접고 청와대에서 누군가가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 여론의 일부를 청와대에서 대변하고 그리고 독립기관이나 역시 행정기관인 선관위의 논의 진행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우려를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정개특위에서 이런 저런 것을 다 감안해서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너무 장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사무총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처의 한 2800명, 3000명 되는 모든 전 직원은 우리 위원회가 경계해야 될 것은 시대와 상황이 아무리 바뀌었다 하더라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거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영원한 선관위의 지표로 삼고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위원장으로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선관위에서 안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호불호를 떠나서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토론해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일단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에서 안을 마련해서 정개특위에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우리 기준에서, 국민의 기준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발표를 보면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도 이것은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이미 그러한 저의 뜻을 한나라당 최고중진회의에서 의견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민의 여론을 감안해서 청와대의 의견을 발표하거나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절차와 절제가 필요한 사항이다, 정치 용어로 '정치 개악이다.' '정치 후퇴다.' 또는 '청부 입법이다.'라는 표현은 저도 청와대 대변인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정치권에 대해서 적절한 용어 선택도 아니다, 이러한……

중앙선관위뿐 아니라 우리 국회도 독립적으로 입법할 권한이 있는 독립기관입니다. 우리 정치개혁특위도 그러한 입장인데 여기서 논의하기도 전에 어떤 억압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저는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그런 면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동감입니다.

앞으로 사안이, 우리 특위에 많은 것들이 여기 오늘 200여 건에 걸친 법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질타할 내용도 있고 또 찬성할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앞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가장 힘이 센 청와대에서 지나치게 가이드라인을 해서 억압적인 분위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정개특위는 그러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 특위를 운영하겠다 이런 위원장의 의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발의)(이명수 의원 외 9인 발의)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김진표·김재윤·노영민·권선택·이시종·양승조·이광재·송민순·오제세·변재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42)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이계진·강성천·윤석용·임태희·강창일·조전혁·현경병·손범규·안상수·김성수·정갑윤·임두성·구본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74)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강창일·강길부·김우남·윤석용·김정권·송민순·양승조·장세환·임두성·송영선·안상수·김성순·이미경·박선숙·최철국·홍정욱 의원 발의)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강창일·김희철·이한성·김종률·안민석·박기춘·이명규·김재균·안상수·문희상·장세환·이혜훈·최문순·이진삼·신상진 의원 발의)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윤석용·우제창·김희철·박종희·양정례·이한성·홍정욱·이정선·정하균·김소남·유성엽·신상진·이화수·이진삼·임두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307)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곽정숙·홍정욱·정하균·이진삼·김성곤·박은수·이한성·김성태·김희철·강기갑·홍희덕·권영길·이정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330)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김성수·유성엽·유기준·안상수·김태원·구본철·신상진·강석호·박종희·홍장표·김종률·안효대·이진삼·이한성·송광호·유재중·황우여·김성곤·이해봉·박대해·김영우·양정례·홍일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332)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허원제·유정복·이한성·양정례·유성엽·구본철·남경필·손숙미·안홍준·신상진·정하균·이진삼·이정선·박영아·황우여·박대해·정해걸·윤영 의원 발의)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강창일·김진표·김충조·박기춘·백재현·신학용·오제세·우제창·이석현 의원 발의)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이한성·임두성·안홍준·안상수·유성엽·신영수·박종희·강석호·송광호·황우여·정해걸·정영희·이혜훈·김성태·이상민·정하균 의원 발의)(의안번호 387)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서갑원·유정현·유성엽·장세환·이진삼·김종률·안홍준·이한성·정하균·김세연·박선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399)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이한성·임두성·안홍준·안상수·유성엽·박종희·강석호·송광호·황우여·조해진·이혜훈·김성태·이상민·정하균 의원 발의)(의안번호 424)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이한성·임두성·안홍준·안상수·유성엽·신명수·박종희·강석호·송광호·황우여·이혜훈·나경원·김성태·이상민·정하균·박보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436)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한선교·구본철·양정례·강석호·이한성·이진삼·정의화·유성엽·안상수·정해걸·이성헌·박보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445)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강창일·전병헌·정장선·김진표·양정례·우제창·오제세·박병석·김재윤·양승조·안민석·전혜숙·최재성·우윤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501)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노철래·이한성·김소남·김성조·구본철·정해걸·조윤선·강길부·김영우·김학송·양정례·송훈석·신성범·김동성·이화수·송영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585)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유기준·양정례·백성운·송영선·김성태·강승규·이정선·김태환·윤석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665)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김성회·강석호·강승규·김성태·김태원·김효재·나경원·남경필·박종희·배은희·백성운·손범규·정병국 의원 발의)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이혜훈·김재윤·김동철·곽정숙·이정희·이미경·이애주·최문순·신낙균·김금래·박선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692)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신낙균·이종걸·박기춘·이광재·양승조·장세환·김희철·안규백·신학용·김충조·이용섭·김성순·김우남·홍희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724)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백원우·박기춘·최재성·양승조·김종률·조경태·김충조·김재윤·박선숙·이광재 의원 발의)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이시종·변재일·우제창·이광재·김종률·백재현·김희철·이명수·노영민·오제세·박상돈 의원 발의)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유정 의원 발의)(김유정 의원 외 82인 발의)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정해걸·박대해·허태열·안상수·이혜훈·박보환·이한성·정하균·박종희·김종률·이진삼·강석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949)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장표 의원 대표발의)(홍장표·권영진·김성수·김성태·김을동·김태환·노철래·백성운·안상수·유성엽·이재선·이철우·정갑윤·정영희·한선교 의원 발의)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김희철·이한성·이종혁·백성운·김재윤·이진삼·이인기·구본철·정병국·박종희·임동규·김효재·송영선 의원 발의)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이진삼·김장수·김용구·변웅전·이해봉·임영호·이상민·류근찬·김영진·김낙성·김창수 의원 발의)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성윤환·강석호·김광림·김태환·안상수·유기준·유재중·이경재·정해걸·정희수·조원진·최구식·현기환·홍사덕·홍장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766)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정권·강석호·김영록·이무영·장세환·강운태·정하균·황우여·우제창·정병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1805)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최인기·최규식·이무영·권경석·조진형·강기정·김유정·김충조·김희철·이윤석·김태원·신지호·유정현·이은재·이인기·장제원·정갑윤 의원 발의)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이한성·이진삼·김정권·유기준·신상진·구본철·박종희·송영선·김희철·원희목·김우남·김재윤·이정선·최영희·최인기·김소남·김효재·강석호·손범규·박보환·김동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2259)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2688)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안민석·송영길·최영희·김동철·강기정·변재일·이석현·문학진·김춘진·홍재형 의원 발의)(의안번호 2805)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임동규·이한성·김정훈·이군현·이춘식·이윤성·최병국·정영희·허천·신성범·백성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2809)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이한성·임동규·유성엽·김정훈·이군현·이춘식·이윤성·최병국·정영희·허천·신성범 의원 발의)(의안번호 2820)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조윤선·전혜숙·이계진·안홍준·조문환·송광호·주호영·양승조·김상희·김재윤·이윤석·최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2958)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유정현·김성회·정진섭·정갑윤·권경석·강성천·손숙미·홍장표·고승덕·유재중·이주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084)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주성영·최구식·성윤환·유승민·이한성·유성엽·나경원·양정례·김성곤·정하균·김정훈·임동규 의원 발의)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최구식·박민식·유승민·유기준·김무성·김광림·유성엽·박종희·이종혁·이명규·조문환·이학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3240)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최구식·박민식·유승민·유기준·김무성·김광림·유성엽·이종혁·이명규·조문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3314)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김충환·송민순·유성엽·정미경·김기현·이한성·권영진·안상수·임해규·김성수·이시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3409)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권선택·심대평·김용구·이재선·이용희·변웅전·김낙성·이명수·임영호·이회창·김창수·박상돈·류근찬·이진삼·조순형·이영애·박선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598)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양승조·홍재형·강창일·유원일·유성엽·안민석·권영길·김재균·강기갑 의원 발의)(의안번호 3660)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강창일·양승조·김동철·김재균·김우남·최재성·최인기·이미경·안민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3939)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안상수·유기준·정해걸·황우여·이화수·이인기·오제세·안효대·이한성·손범규·배영식·김충환·김태환·김성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4096)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진표·김재윤·천정배·안민석·신학용·박지원·조배숙·김희철·김춘진·김영록·최규성·정해걸·이춘석·김성순·강운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4101)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훈석 의원 대표발의)(송훈석·박민식·이화수·이계진·최욱철·김우남·정해걸·이사철·조문환·이윤석·김영우·김낙성 의원 발의)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낙성 의원 대표발의)(김낙성·우윤근·김창수·송훈석·임영호·최인기·이재선·심대평·최철국·류근찬·김용구·이영애·이상민 의원 발의)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김우남·이미경·김동철·양승조·강창일·최영희·최인기·전혜숙·서갑원·이용섭·안민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212)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이한성·주광덕·신영수·김성순·차명진·김종률·우제창·김성태·정해걸·윤석용·이정선 의원 발의)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권선택·변웅전·심대평·이회창·박선영·이재선·이명수·김용구·김낙성·이진삼·류근찬·임영호·박상돈·조순형·이상민·이영애·김창수·문국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4402)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송민순·최철국·양승조·송영길·백원우·최영희·강명순·이미경·전현희·곽정숙 의원 발의)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김우남·박은수·박주선·백원우·서갑원·안민석·양승조·이광재·최철국 의원 발의)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양승조·김동철·서갑원·이미경·김재균·김우남·김상희·이석현·이용삼·김충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4608)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이혜훈·유기준·김정권·김태원·유승민·이화수·손범규·이해봉·유성엽·안상수·윤상현·신영수·강석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626)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진성호·황우여·안상수·안효대·권경석·임두성·고승덕·원희목·김성수·이한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4682)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례 의원 대표발의)(양정례·노철래·정영희·송영선·박기춘·강운태·손범규·송민순·김을동·정하균 의원 발의)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성윤환·이한성·임동규·이정선·이성헌·한선교·박기춘·변재일·박상돈·박순자·원유철·정해걸·강석호·배은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4745)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권택기·조문환·손범규·윤석용·강석호·박준선·황영철·이성헌·이사철·남경필·김영우 의원 발의)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유원일·신영수·현경병·안효대·이정선·이한성·이윤성·손범규·오제세·황영철·이낙연·진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826)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양승조·변재일·천정배·김창수·이종걸·강창일·김영진·장세환·김효석·이미경·강기정·박상돈·이명수·박선숙·문학진·강봉균·우제창·김희철·최규성·이낙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4913)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신낙균·송민순·안규백·박주선·우제창·강창일·이미경·최규식·박기춘·이두아·김재윤·이인기·이낙연·서종표·문학진·김상희·김춘진·전혜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4930)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김성수·안효대·이정선·이성헌·이화수·임두성·김효재·이한성·김장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5026)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이주영·김창수·심대평·이재선·권선택·안민석·김낙성·임영호·박상돈·이낙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5292)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송영선·김을동·김성수·노철래·박대해·김정권·정영희·이한성·정하균·심대평 의원 발의)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권선택·김창수·심대평·이명수·이상민·이재선·이용희·임영호·주승용 의원 발의)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임동규·신영수·정수성·김영선·박상돈·강명순·정해걸·정갑윤·손범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5375)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손숙미·이정선·강성천·고승덕·신지호·배은희·여상규·나성린·강석호·윤석용·정미경·김금래·김소남 의원 발의)(의안번호 5783)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김소남·손숙미·정미경·강명순·공성진·이군현·이애주·이종구·이정현·이화수·김옥이·이은재·조윤선·김금래·안홍준·이한성·권경석·황진하·정옥임·신상진·김성수·강승규·이병석·박영아 의원 발의)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헌 의원 대표발의)(이성헌·김정권·손범규·이명수·이한성·임두성·김성수·김낙성·고승덕·신상진 의원 발의)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정의화·유기준·강성천·유성엽·황우여·한선교·강석호·정미경·박준선·이명수·김을동·박상은 의원 발의)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김영록·신성범·김종률·조진래·이인제·송훈석·송광호·이용삼·정병국 의원 발의)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최재성·조경태·이윤석·박병석·김유정·이미경·신낙균·김충조·오제세·최철국·김동철·최규식·이강래·안규백·김재균·원혜영·김부겸·강기정·장세환·노영민 의원 발의)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원유철·안효대·강길부·이윤석·김성조·최병국·신성범·이진복·김소남·김기현·최구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6004)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강성천·김성수·김성회·김세연·박대해·박민식·서상기·이종혁·이화수·정갑윤·조원진·황영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6022)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진 의원 대표발의)(이계진·신학용·정영희·유기준·최영희·유성엽·손범규·이해봉·이인기·박은수·이한성 의원 발의)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조영택·최영희·송민순·김춘진·백원우·전현희·최재성·박은수·강창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6457)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서갑원·신학용·김상희·양승조·박은수·김성순·강운태·우제창·백재현·김우남 의원 발의)(의안번호 6462)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김성조·이한성·한선교·조문환·유일호·임동규·성윤환·윤영·정옥임·배은희 의원 발의)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홍재형·양승조·송민순·강창일·김영진·김유정·조영택·박선숙·이시종·조경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6598)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김재윤·양승조·강창일·김창수·박상돈·이석현·강기정·김재균·김영진·박은수·안규백·김부겸·최영희·이미경·김성순·조배숙·박지원·박기춘·김영환·조영택·안민석·김정권·우제창·문학진·이용섭·변재일 의원 발의)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김동철·이미경·김효석·이석현·백재현·홍재형·양승조·안민석·김유정·서갑원·최영희·김상희·김재균 의원 발의)(의안번호 6726)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이정선·홍준표·진성호·이한성·이명수·한선교·권영세·박준선·이명규·김성회 의원 발의)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원희목·현기환·김정훈·현경병·김정권·권택기·허천·신지호·진수희·김소남·장제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6882)

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정갑윤·김태원·김소남·정수성·이윤석·신지호·안경률·권경석·이명수·이은재·이범래·유정현·김영우·차명진·심재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6966)

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김태원·김소남·정수성·이윤석·신지호·안경률·권경석·이명수·이은재·이범래·유정현·김영우·차명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6971)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김우남·이명수·이한성·황진하·서상기·김세연·정수성·이은재·박준선 의원 발의)

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강기정·원희룡·최영희·김춘진·서갑원·문학진·김재균·김영진·이찬열·백원우·김우남·전현희·이종걸·박선숙·조영택 의원 발의)(의안번호 7072)

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백원우·전현희·김춘진·이찬열·이종걸·안민석·최규식·박선숙·조영택·박주선·김영진·강창일·강기정·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7073)

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서갑원·김창수·김영진·신학용·이찬열·조영택·오제세·양승조·박선숙·전병헌·최재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7220)

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박주선·조영택·최영희·전혜숙·박기춘·문학진·김상희·김진애·박은수·홍재형 의원 발의)

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김우남·김재균·강창일·김동철·이미경·최영희·최규식·이석현·양승조·김효석·최재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7469)

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 의원 대표발의)(남경필·김무성·정병국·원희룡·정희수·박선영·강명순·김부겸·정태근·이춘석·황우여·박준선·권영진·정의화·김기현·권택기·구상찬·조정식·정두언·권영세 의원 발의)

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신성범·박희태·조진래·성윤환·정해걸·정갑윤·조문환·송광호·정병국·박민식 의원 발의)

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박은수·김재윤·최영희·김유정·전현희·신낙균·조배숙·김춘진·최문순·이미경·이은재·박순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7523)

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홍재형·김동철·김영진·신학용·조배숙·송영길·김재윤·이낙연·이종걸·백재현·조영택·김성곤·양승조·박선숙·변재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7530)

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전혜숙·강기정·박선숙·최영희·김재윤·이찬열·김재균·우윤근·전현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7591)

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권선택·임영호·강창일·유성엽·이상민·김창수·박상돈·이인제·이재선·김낙성·최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7685)

1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강용석·고승덕·권영세·김성태·김세연·김영우·김옥이·김재경·김정권·김창수·박민식·서상기·손범규·손숙미·송영선·송훈석·신영수·여상규·유기준·유정현·이계진·이군현·이범래·이정선·이한성·임영호·장윤석·정태근·조원진·주광덕·주성영·최연희·허천·홍일표·권선택 의원 발의)(의안번호 7749)

1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강기갑·곽정숙·권영길·김성곤·김상희·김영진·김유정·김재균·김재윤·김진애·김춘진·김혜성·김효석·노영민·문학진·박기춘·박병석·박선숙·박영선·박은수·박주선·박지원·서종표·송영길·신건·신낙균·신학용·안민석·오제세·우제창·원혜영·유원일·이강래·이용희·이정희·이종걸·장세환·전현희·조경태·조승수·최규식·최문순·최영희·최인기·홍재형·홍희덕 의원 발의)

1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최영희·김성순·김춘진·박은수·송영길·양승조·원혜영·이미경·이찬열·전혜숙·전현희 의원 발의)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서갑원·양승조·전병헌·김용구·박선숙·오제세·김영진·황우여·유원일·장세환·최재성·이인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7844)

1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금래 의원 대표발의)(김금래·김세연·박은수·신낙균·신영수·안홍준·원희룡·원희목·유정현·이두아·이인기·이한성·이해봉·조영택·한선교·허원제·홍영표·홍정욱·홍희덕·황우여 의원 발의)

1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재윤·최문순·변재일·신학용·홍영표·강창일·이찬열·조영택·권영길·전병헌·유성엽·홍희덕·박은수·김재균·정동영·유원일·김영진·우제창·박선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7938)

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김무성·홍영표·이찬열·송영선·유성엽·김재윤·안민석·오제세·박선숙·신낙균·김영진·이성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7944)

1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의원 대표발의)(윤영·정희수·김효재·권영진·홍준표·이화수·이해봉·장광근·노철래·김무성 의원 발의)

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원혜영·정해걸·이한성·박민식·오제세·김금래·유정현·박순자·안경률·안홍준·박대해·이철우·김광림·황우여·박영아 의원 발의)

1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정병국·유기준·권영진·이해봉·안홍준·정해걸·박선영·김성순·이종혁 의원 발의)

1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김춘진·전현희·강봉균·우제창·홍재형·박은수·유성엽·이한성·박기춘·조영택·양승조·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8394)

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김창수·이재선·김용구·이명수·임영호·권선택·변웅전·류근찬·김낙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8436)

1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홍재형·김우남·이낙연·조배숙·김춘진·노영민·신학용·김유정·최문순·김영진·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8514)

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윤석용·원희목·정병국·유기준·원희룡·이한성·홍영표·권영진·정양석·이명수·안경률·정해걸·황우여·김성태·신영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8600)

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김충환·김옥이·유성엽·강석호·유기준·공성진·김효재·황우여·황진하·임해규·김용구·전여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8654)

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박은수·양승조·김영록·장세환·최규성·전현희·최철국·유선호·김재균 의원 발의)

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홍재형·백재현·조경태·박선숙·우제창·최인기·오제세·양승조·노영민·변재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8814)

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유성엽·김재균·김우남·김성곤·김재윤·최규성·조영택·안민석·정범구·박선숙·김춘진 유원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8840)

1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정두언·이인기·최구식·김성조·장제원·윤영·김학송·김태원·노철래 의원 발의)

1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금래·김옥이·김학송·박주선·신낙균·양승조·유승민·이종걸·이진삼·이춘석·임영호·원혜영·장세환·조영택·최규식·홍영표 의원 발의)

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김학송·김정권·조진래·황진하·유승민·임동규·홍정욱·정태근·김장수·유기준 의원 발의)

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이상민·이미경·이한성·권경석·신성범·강명순·신상진·황우여·윤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8925)

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이사철·조문환·김정훈·이한성·정갑윤·정희수·장광근·박준선·김성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8957)

1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해걸 의원 대표발의)(정해걸·정희수·안규백·김성수·신학용·이철우·최인기·임영호·정양석·정갑윤·김세연·임동규·황영철·김성태·유성엽·김학송·김효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9055)

1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유기준·진영·김효재·황우여·권경석·조진래·이경재·권영진·정해걸 의원 발의)(의안번호 9057)

1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김재균·양승조·조영택·유성엽·최규성·안민석·이윤석·천정배·김영진·김춘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9075)

1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조정식·홍영표·전혜숙·강기정·최규식·이종걸·노영민·홍재형·김춘진·김재윤·손숙미·박지원·박선숙·정동영·이한성·유원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9118)

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조정식·이미경·김재윤·최규성·노영민·이윤석·김영진·문학진·추미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9133)

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김재윤·김재균·조정식·최문순·이미경·강창일·신학용·노영민·이석현·김효석·백재현·김동철·이성남·조영택 의원 발의)

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곽정숙·이정희·강기갑·홍희덕·권영길·조승수·안민석·이낙연·박은수·이성헌·유성엽·정동영·이상권·박주선·유원일·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9254)

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윤상일·신지호·이명수·김소남·박대해·서병수·안효대·이인기·임동규·이한성·정희수·김혜성·유성엽·공성진·배영식·최규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9294)

1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원희목·김소남·임동규·이주영·정미경·김혜성·고승덕·안형환·강성천·이명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9326)

1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임영호·김춘진·김을동·이재선·류근찬·김창수·김용구·송훈석·김낙성·정해걸 의원 발의)(의안번호 9366)

1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강기정·문학진·안민석·최철국·양승조·최재성·주승용·조경태·김우남·신건·이춘석·전현희·홍재형 의원 발의)

1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해걸 의원 대표발의)(정해걸·김정·이한성·박대해·홍영표·정희수·구상찬·노철래·유정현·송훈석·권경석·이해봉·김소남·유기준·이철우·강석호·이명수·신성범 의원 발의)(의안번호 9415)

1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김정훈·원희목·배은희·나성린·김성태·한기호·유정현·유일호·백성운·정진섭·박상은·김금래·장제원 의원 발의)

1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영택 의원 대표발의)(조영택·안규백·박은수·김재균·최문순·김동철·김춘진·주승용·전병헌·박주선·최철국·이종걸 의원 발의)

1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진영·유정현·김효재·김정권·박보환·구상찬·김학용·권영진·김태원·김성동 의원 발의)

1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권 의원 대표발의)(김정권·강길부·권경석·김성조·김태원·김학용·윤석용·이종혁·정미경·주승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9761)

1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주승용·최철국·김재균·최규성·강창일·문학진·김창수·유선호·김유정 의원 발의)

1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박기춘·김영진·최규성·박은수·홍영표·박선숙·이종걸·박주선·추미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9782)

1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원희목·고승덕·정미경·이한성·이인기·이명수·안형환·이두아·김소남 의원 발의)(의안번호 9817)

1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이찬열·박우순·김성곤·최문순·이인기·손범규·이한성·유성엽·박주선·최규성·김재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9986)

1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창수·임영호·김용구·이상민·권선택·김을동·김태원·임동규·안효대·윤상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16)

1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정장선·우제창·최문순·김춘진·양승조·박은수·박주선·유재중·김용구·최철국 의원 발의)

1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조경태·이명수·신건·이상민·김성수·이찬열·오제세·김우남·김용구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11)

1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고승덕·김성수·안상수·이정선·원희목·안홍준·김낙성·이은재·배은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13)

1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최규성·이용섭·박은수·강창일·김세연·홍희덕·김우남·송민순·이미경·이찬열 의원 발의)

1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해 의원 대표발의)(박대해·유정현·김을동·김태원·김충환·정수성·신영수·정해걸·노철래·김금래 의원 발의)

1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유정현·안효대·이정선·김성수·조전혁·유재중·손숙미·정미경·원희목 의원 발의)(의안번호 10335)

1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진형 의원 대표발의)(조진형·이사철·조문환·이경재·김성수·이철우·홍일표·안형환·이화수·김영우·이은재·허천·박대해·홍사덕·김태원·최연희 의원 발의)

1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권 의원 대표발의)(김정권·김장수·이한성·손범규·한선교·임해규·김태원·권영진·황영철·현기환·김성태·백성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10410)

1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김재균·이미경·김동철·이석현·양승조·김유정·백재현·신건·강창일·최재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61)

1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이애주·박선영·유정현·박민식·김성태·이한성·신영수·임해규·황영철 의원 발의)

1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권선택·김낙성·김용구·김창수·류근찬·박선영·변웅전·이명수·이상민·이용희·이재선·이진삼·이회창·임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41)

1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이인제·이해봉·김충환·강석호·여상규·유원일·김충조·변웅전·이진삼·임영호·안규백·이강래·정수성·황우여·정해걸·안민석·오제세·김장수·서병수·김낙성·조진래·이춘석·이용경·원희목·이상민·신영수·이재선·심대평·노철래·이한성·노영민·김춘진·우윤근·유성엽·박영선·김영록·박기춘·정갑윤·류근찬·김용구·이인기·박우순·이석현·홍재형·송광호·변재일·박순자·이은재·이정현·이두아·최인기·이용희·주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93)

1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현 의원 대표발의)(유정현·심대평·정두언·조전혁·조원진·박보환·최경희·임해규·이인기·고흥길·배영식·원유철 의원 발의)

157. 공직선거법 개정(재외선거 우편투표 허용)에 관한 청원(박준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8. 선거권 연령 조정에 관한 청원(강기갑·권영길·김재윤·박선숙·유원일·이종걸·홍희덕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9.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강기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160. 재외국민선거 우편제도 실시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영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44분)

○위원장 이경재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유사 사안별로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160항까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되는 법안 및 청원들은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와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아니요, 잠깐! 정당법 아직 상정 안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경재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권영길 위원 그러니까 일괄해서 지금 넘기려고 그래서 그런데, 정당법 상정에서 상정을 반대할 안건이 있기 때문에 말씀……

○위원장 이경재 그러니까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님들이 중간에 나가시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것을 의결할 때 의결정족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여기에서 토론해서 일단 소위원회로 다 넘겨 갈 것은 넘겨갈 테니까 미리 의결을 해 주시고 찬반토론은 이제부터 시작해도 되는 겁니다.

○권영길 위원 위원장께서 나머지도 일괄 상정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일괄 상정을……

○위원장 이경재 상정을 반대한다는 뜻입니까?

○권영길 위원 한 법안은 반대가 있기 때문에, 정당법의 한 법안을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그러면 어느 법을……

○권영길 위원 의사일정 166항으로 되어 있고요 의안번호 6670번입니다. 김정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이경재 하여튼 상정해서 모든 법은 다 토론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권영길 위원 말씀은 나중에 부결될 수도 있고 통과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상정은 일단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권영길 위원 이 부분만 반대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재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발언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해요. 지금은 앞으로 의결정족수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의결해 두자는 건데 권영길 위원님께서 상정에 반대를 한다면 나중에 소수의견으로 상정에 반대했다는 의견을 남기고……

○권영길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상정 여부가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일괄 상정을 하신다고 그러면서……

○위원장 이경재 알겠습니다.

그게 정당법이지요?

○권영길 위원 예.

○위원장 이경재 그러면 정당법은 나중에 상정하기로 하고요. 우선 다른 것부터 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예.

○위원장 이경재 그래서 오늘 상정되는 선거 관계법 법안 및 청원들은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선거관계법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김정훈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권영길 위원님께서 반대를 하시는 법안이 뭔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얘기를 듣고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서 그 법만 제외하고 상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권영길 위원님, 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의안번호 6670번인데요. 이게 절차상으로 사실상 지난번 정개특위에서 심의 토의해서 사실상 이게 부결된 것, 공식적으로 폐기는 안 됐지만 폐기된 것하고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정당정책토론회에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를 구분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난번 정치개혁특위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법안은 폐기가 안 됐지만 사실상 그때 토론하고 반대해 가지고 부결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상정 요건을 안 갖추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그러면 간사님들 두 분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상의를……

○박기춘 위원 김 위원이 양해하면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상정하시고……

○위원장 이경재 알겠습니다.

○박기춘 위원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지 말고.

○위원장 이경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166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 의원께서 제기하신 것은 일단 빼고요. 나머지는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와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과 129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곽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숙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는가요?

이게 이렇습니다. 얼마나 획일적으로 장애인, 키 작은 사람은 이렇게 마이크 사용조차 불편하

도록 아직도 우리 국회가 이렇게 후진적인 환경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있는 곽정숙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7번 안건, 그다음에 129번 안건……

위원장님, 2개를 같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재 예.

○곽정숙 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번 안건으로 나와 있는 공직선거법 내용은, 사회 약자를 대하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제도를 보면 그 사회의 성숙된 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장애인 복지 예산이 최하위 수준이고, 장애인 인구는 등록 기준으로 하더라도 5%에 해당하는 2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중 장애인 당사자 의원은 2.6%, 광역의원은 1.7%, 기초의원은 1.2%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소외된 장애인을 대변하고 장애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활동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또 공직선거법에서 피선거권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장애인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인구의 10%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에도 인구의 10%인 적어도 10%가 국회에 정치 참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진정한 정치 실현이 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피선거권 보장을 위해서 각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선거 후보자 추천할 때 의무적으로 10%를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선거의 경우에는 10%를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관할 선관위가 후보자 등록 신청을 수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등록 후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만들어 법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활동보조인이 명함을 대신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장애인 후보자의 선거운동 시 활동보조인은 행렬 등의 금지 인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 후보자의 선거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선거권 행사의 보장을 위해서 각종 편의 제공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내용을 책자형 공보와 동일하게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방송광고 등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투표소 설치 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해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29번에 있는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국회에 권고사항이 내려져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활동보조인의 수당, 실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후보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보장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예비후보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가 자신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선거운동과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에 대한 비용을 보전하여 주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후보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공보물을 제작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전하여 주지만, 예비후보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홍보물을 제작할 경우에는 비용 보전을 하여 주고 있지 않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에 대한 비용과 예비후보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홍보물을 제작할 시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158건 제안설명서 및 청원요지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되,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충덕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56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4건의 공직선거법 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사항별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영희 의원안은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려는 것이고, 양승조 의원안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은 정치적·사회적으로 미치게 될 영향과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강기정 의원안은 6개월 이상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 한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나,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상충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선거구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권선택 의원안은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를 현행 '1인'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로 개정하여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의 장단점,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셋째, 선거인명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종률 의원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을 이용,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투표소 설치와 재·보궐선거 시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를 시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투표율 제고라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전산조직을 이용한 통합선거인명부 작성이나 투·개표의 경우는 기술적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박은수 의원안은 장애인이 직접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원할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봅니다.

넷째, 후보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은재 의원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현행 30% 여성할당제를 강제규정으로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 수리 불가사유 및 후보자 등록 무효사유로 하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도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나, 남성에 대한 역차별 문제, 장애인 등 다른 사회적 약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현행법상 후보자 등록 신청 시 전과기록 제출은 실효된 형을 포함,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곤 의원안은 살인, 강도, 성폭력범죄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실효된 형을 제출 의무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유권자의 알권리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한편 이은재 의원안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도 전과기록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형사사건도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취지가 타당하나, 한편으로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의 상충 여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다섯째, 정당의 당내 경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재성 의원안, 남경필 의원안 및 유성엽 의원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할 때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국민 참여 경선제도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당내 경선의 절차적 민주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다른 당 지지자의 경선 참여로 인한 역선택의 문제, 선거의 조기 과열에 따른 사회적 부담 증가 등의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섯째,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박준선 의원안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전화홍보원을 두며,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선거

운동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으나, 인건비 지출 등으로 인한 선거비용 증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주성영 의원안은 선거공보 등에 비정규학력을 경력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유권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정규학력과 비정규학력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장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박기춘 의원안은 선거공보에 다른 후보자에 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선거공보물을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현실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진영 의원안은 향우회 등의 대표자, 임원 및 구성원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추천 또는 반대를 결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향우회 등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정동영 의원안은 인터넷상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를 상시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서갑원 의원안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표현의 자유의 조화, 국민의식의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노영민 의원안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 및 오차 보정 방법을 함께 알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서,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효과,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실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일곱째, 투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성윤환 의원안은 투표소를 설치할 때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1층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이석현 의원안은 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난 후 투표용지 인쇄 전에 사퇴한 후보자의 경우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후보자의 성명 등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표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후보자 등록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투표용지를 인쇄하게 되는 선거일정상 물리적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덟째, 재외선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안, 박준선 의원안, 안경률 의원안 및 유정현 의원안은 재외선거의 투표방법으로 우편투표 또는 인터넷투표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 할 것이나,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실시되는 재외선거의 성격상 선거의 공정성 확보 방안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박준선 의원안, 안경률 의원안, 김충환 의원안, 안상수 의원안, 김성곤 의원안은 공관 외의 장소에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순회투표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재외선거의 투표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관 이외의 투표소 설치는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김성곤 의원안은 현재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 재외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고 지역을 순회하는 순회사무원을 두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겠으나 야간활동이 어려운 지역의 재외국민 안전 문제, 추가적인 인력 소요 및 예산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기타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성윤환 의원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선거범죄 조사권한을 폐지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 검사의 지휘를 받아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업무가 행정부 소속인 검사의 지휘하에 놓이게 된다

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백원우 의원안은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인 당선인 또는 정당에게 해당 재보궐선거 관리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재보궐선거의 감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우리 헌법이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여상규 의원안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지방선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6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0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체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160건의 안건은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6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이시종·우제창·변재일·이광재·백재현·김희철·이명수·노영민·오제세·박상돈 의원 발의)

16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김희철·이용삼·김재균·김동철·송영길·양승조·강창일·조영택·이미경·김우남·김종률 의원 발의)

16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최영희·김동철·강기정·변재일·안민석·이석현·문학진·김춘진·홍재형 의원 발의)

16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권영진·김성태·신성범·김선동·권택기·박민식·정태근·주광덕·황영철·김성식·조전혁·이한성·현기환·서상기·김세연·이인기·윤석용·남경필 의원 발의)

16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권택기·정태근·현경병·백성운·강승규·조문환·김영우·조진래·이화수·김재경 의원 발의)

16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주성영·신성범·이범래·유정현·성윤환·장제원·이한성·권영진·손범규·김금래·강석호·원희목·신지호·정미경·안효대 의원 발의)

16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박민식·원희룡·박준선·이한성·김세연·정갑윤·현기환·전현희·유재중·박대해 의원 발의)

16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권영길·안민석·강기갑·곽정숙·이정희·홍희덕·조승수·유원일·김재윤·최문순·김영진·유성엽 의원 발의)

17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홍재형·김정권·백원우·임영호·조영택·양승조·주승용·강기정·송민순·조전혁·노영민·전현희·최재성·이윤석 의원 발의)

17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발의)(박기춘 의원 외 86인 발의)

17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박기춘·원혜영·박은수·정장선·유선호·박영선·김진표·김재윤·오제세·조진형·유성엽·백재현·전병헌·권성동·이정선 의원 발의)

173.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강기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17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윤석용·우제창·김희철·양정례·고승덕·김성태·정해걸·정하균·김소남·정양석·이종구·유성엽·신상진·이진삼·임두성·김재윤 의원 발의)

17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유기준·양정례·백성운·고승덕·송영선·김성태·강승규·이정선·김태환 의원 발의)

17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발의)(김희철 의원 외 82인 발의)

17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성윤환·강석호·김광림·김태환·안상수·유기준·유재중·이경재·정해걸·정희수·조원진·최구식·현기환·홍사덕·홍장표 의원 발의)

17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17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권선택·심대평·김용구·이재선·이용희·변웅전·김낙성·이명수·임영호·이회창·김창수·박상돈·류근찬·이진삼·조순형·이영애·박선영 의원 발의)

18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김정권·김성수·신지호·임해규·정해걸·이범래·김소남·이은재·김성조·이명규 의원 발의)

18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원유철·백성운·이군현·임동규·현경병·최병국·진성호·김소남·이춘식 의원 발의)

18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양승조·김재균·강창일·김우남·김동철·이미경·최규식·이석현·김효석·최영희·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4833)

18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안민석·강창일·김종률·전혜숙·유성엽·김성곤·원혜영·이두아·최영희 의원 발의)

18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김성회·고승덕·김세연·김영진·김성태·김충환·김춘진·노철래·박진·박상은·박종희·여상규·이경재·이주영·이철우·유기준·장윤석·정미경·조전혁·황우여 의원 발의)

18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권택기·정태근·현경병·백성운·강승규·조문환·김영우·조진래·이화수·김재경 의원 발의)

18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곽정숙·이정희·홍희덕·권영길·강기갑·박선영·김춘진·신낙균·박은수·유성엽·조승수·최영희 의원 발의)

18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철국·전현희·이춘석·우윤근·박은수·노영민·김재균·김동철·박상돈·양승조·김성곤·이용섭 의원 발의)

18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김동철·김효석·홍재형·양승조·안민석·김유정·서갑원·최영희·김상희·김재균 의원 발의)(의안번호 6728)

18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강창일·정동영·강운태·조승수·박선숙·김춘진·김우남·김영진·강기갑·곽정숙·이낙연 의원 발의)

19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손범규·이정현·신성범·임영호·이해봉·박대해·황우여·최구식·안효대 의원 발의)

19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안효대·여상규·강성천·나성린·장제원·이범래·김소남·임동규·이명수 의원 발의)

19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김정권·양승조·강창일·김우남·송영길·이명수·김유정·원혜영·강기정·서종표 의원 발의)

19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최영희·김성곤·김유정·박은수·문학진·박선숙·이성남·신낙균·이종걸 의원 발의)

19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강기정·이찬열·서종표·이종걸·김춘진·김진표·백원우·서갑원·김영진 의원 발의)

19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백원우·박기춘·김동철·이춘석·김우남·장세환·문학진·강기정·이윤석·이석현·최재성·박지원 의원 발의)

19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고승덕·김성수·이정선·원희목·안홍준·안효대·조전혁·유재중·장제원 의원 발의)

19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강창일·유선호·박은수·김영우·김영록·유성엽·김세연·김춘진·강용석·조영택·백재현 의원 발의)

198.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강기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시07분)

○위원장 이경재 다음은 의사일정 161항부터 198항까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7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7건 제안설명서 및 청원요지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충덕 계속해서 12건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정당법 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원의 자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먼저 권영길 의원안은 공무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의 보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홍재형 의원안과 박기춘 의원안은 국회 부의장실에 근무하는 비서관 등과 국회 교섭단체의 행정보조요원을 각각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이는 그 임명절차 또는 신분상 특수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 정당 조직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강기정 의원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1개의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무소는 시도당의 하부조직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권택기 의원안은 정당은 필요한 경우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당원협의회와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개정안의 취지는 당원협의회를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만 이는 지난 04년 정당법 개정 당시 폐지된 지구당의 부활로 볼 수 있어 지구당 폐지 당시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당원협의회의 민주적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함께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김성곤 의원안은 정당이 재외공관이 설치된 국가에 재외자문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들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재외조직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24건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정당법 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역시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당원협의회의 정치자금 관련 권택기 의원안은 당원협의회도 당비 및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수수한 당비 중 5000만 원까지는 그 당원협의회의 운영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원협의회의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둘째, 후원회 및 후원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강기정 의원안은 공무원 등의 후원회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훼손 가능성이라는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최재성 의원안은 중앙당의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후보자도 후원회 지정권자가 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라고 보지만 지도부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원우 의원안은 제3자가 개인별 1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소액 후원금 모금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강요 등에 의한 모금 발생 등 부정적 측면을 함께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셋째, 국고보조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안경률 의원안과 권택기 의원안은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그 지급액의 100분의 50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는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곽정숙 의원안은 여성후보자 추천보조금을 여성후보자의 추천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여성후보자 추천보조금을 국회의석수 등에 따라 지급하고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이은재 의원안은 여성 후보자 추천보조금을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여성 후보자 추천 의무화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김소남 의원안은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정당의 존속기간에 따라 지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정당의 존속 장려라는 측면과 신생 정당에게 불리하다는 측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넷째, 기부의 제한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주승용 의원안은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 신청 180일 전부터 신청 후 180일까지는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공천 관련 정치자금 기부금지 규정을 구체화한다는 의미는 있으나 정치자금의 기부를 금지하는 것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권경석 의원안 및 권택기 의원안은 법인 단체의 기탁금 기탁을 허용하고 있고, 백원우 의원안은 단체의 후원금 기부와 기업의 기탁금 기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은 단체 기업의 정치적 의사표시의 자유와 현행법에서 법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입법 취지,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한편, 권경석 의원안은 국회의원 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는 기탁금으로 500억 원의 범위 안에서 정치활동추진비를 예산에 계상, 국회의원 개인별로 균등 분할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간 500억 원의 기탁금 조달이 가능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섯째,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 공개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서병수 의원안은 공직선거가 없는 연도에는 국회의원 후원회의 회계보고를 현재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계보고 축소에 따른 인적 물적 비용의 절감 측면과 후원금 투명성 확보의 저해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백원우 의원안은 후원금의 기부내역 공개를 강화하면서 공개한 후원금에 대해서는 후원회와 그 지정권자가 다른 법률에 따른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이에 대한 유권자의 정치적 심판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이른바 입법로비의 허용으로 오해될 수 있어 국민적 공감대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여섯째, 벌칙 관련 조경태 의원안은 후원회가 정치자금 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원회의 원활한 정치자금 영수증 발행을 위한 금융기관의 협조 확보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마는 아까 선거관계법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도록 하자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기로 하고 37건의 안건은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미 이것은 앞서서 의결을 한 바 있기 때문에 통보만 해 드립니다.

오늘 심사를 거친 많은 안건들이 2개 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장은 한나라당의 김정훈 위원께서 맡으시고,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장은 민주당의 박기춘 위원에게 맡기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 소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법안심사 등 소위 활동에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소위원회 구성을 마쳐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 위원(19인)

권영길	권영진	김성곤	김정훈
김혜성	노영민	류근찬	박기춘
박준선	백원우	성윤환	안효대

여 상 규 이 경 재 이 은 재 전 병 헌
조 경 태 진 영 최 규 성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곽 정 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	연 호
전문위원	손	충 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무총장	이	종 우
선거실장	김	용 희
재외선거기획관	정	훈 교
법제기획관	추	형 관
조사정책관	윤	석 근
정당국장	손	재 권

【보고사항】

○의안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영 의원 대표발의)

(2011. 3. 29 박선영·권선택·김낙성·김용구·김정권·김창수·류근찬·변웅전·이명수·이용희·이재선·이진삼 의원 발의)

3월 30일 회부됨